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 증진국에 1개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다양한 가족 포용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과 아이돌봄정책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며,

장관정책보좌관의 명칭을 정책보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 등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부서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여성가족부 직제」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인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정책기획관은 「여성가족부 직제」 제5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제1항 중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을 “청소년가족정책실장”으로,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을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제12호 중 “국·공립”을 “국립”으로 한다.

- ② 「여성가족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청소년정책관은 「여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 제21호의2, 제21호의3 및 제21호의4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가족정책관은 「여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22호부터 제31호까지, 제31호의2, 제31호의3 및 제32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제2항 중 “권익지원과”를 “권익지원과, 권익침해방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여성 권익증진”을 “여성폭력 방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여성폭력방지기본법령의 관리·운영

3의3.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3의4.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및 실적 평가·분석

3의5.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4. 여성폭력추방주간 등 관련 홍보 및 포상

7. 여성폭력 통계 구축 총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등 연구

8의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도·감독

제8조제4항 제1호 중 “성폭력 예방”을 “성희롱·성폭력 방지”로 하며, 제2호 “예방”을 “방지”로 하고, “보호 관련”을 “보호에 관한”으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종전의 제4호, 종전의 제5호 및 종전의 제7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및 제8호로 하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로 하고,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으로 하고, 종전의 제9호 및 종전의 제10호를 삭제하고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

3. 관계 법령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4.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으로 한다.

⑤ 권익침해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총괄 및 이행 점검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연구 및 법·제도 개선
4.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총괄·조정 및 이행점검
6.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성희롱 방지 및 대응 컨설팅 지원

제8조제7항(중전의 제6항) 제8호 중 “여성폭력”을 “성매매 등 여성폭력”으로 하며, 제9호 중 “성교육 및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하며, 제10·11호 및 제13·14호 중 “성교육 및 아동·여성폭력등”을 “아동·여성폭력등”으로 하며, 제15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문화 개선 및 성보호의식”을 “아동·여성폭력 등 예방 인식”으로 하며, 제12·1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8항(중전의 제7항) 제1호 중 “시책”을 “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교육 등 성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68”을 “275”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62”를 “269”로 하며, 일반직 계 “258”을 “265”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2”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3”을 “37”로 하며,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1”을 “22”로 하고,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6”을 “1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0”을 “277”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64”를 “271”로 하며, 일반직 계 “260”을 “267”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2”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5”를 “39”로 하며,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전산주사 · 시설주사 · 공
업주사 · 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9”를 “2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 사
회복지주사보 · 전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6”을 “17”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u>장관정책</u> <u>보좌관</u>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 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 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 다.	제3조(정책보좌관) <u>정책보좌관</u> -- ----- ----- ----- -----. ----- ----- ----- ----- --.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 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 급으로 하고, <u>정책기획관</u> 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 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 ----- --, ----- -----, 「여성가족부 직 제」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기 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인 <u>정책기획관</u> -- ----- ----- -----.
<신 설>	② <u>정책기획관</u> 은 「여성가족부 직 제」 제5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u>보좌한다</u> .
② ~ ⑦ (생 략)	③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7항

제7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까지와 같음)

제7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장-----

--,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 -.

② 「여성가족부 직제」 제9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청소년정책관은 「여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 제21호의2, 제21호의3 및 제21호의4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가족정책관은 「여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22호부터 제

② ~ ④ (생략)

⑤ (생략)

1. ~ 11. (생략)

12.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건립에 관한
사항

13. ~ 15. (생략)

⑥ ~ ⑫ (생략)

제8조(권익증진국) ① (생략)

② 권익증진국에 권익정책과, 권
익지원과, 권익보호과, 권익기
반과 및 아동청소년보호과를 두
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
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
다.

③ 권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신설>

31호까지, 제31호의2, 제31호의
3 및 제32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
다.

⑤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4항
까지와 같음)

⑧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12. 국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계획 수립 및 건립에 관한 사항

13. ~ 15. (현행과 같음)

⑨ ~ ⑮ (현행 제6항부터 제12
항까지와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 권
익지원과, 권익침해방지과, ---

--.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여성폭력방지기본법령의 관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4. <u>여성·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u> 5. 삭제 <2013. 9. 24.> 6. <u>성폭력추방주간 운영 및 권익 증진관련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u> 7. <u>여성·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실태조사 및 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u> 8. <u>여성 권익증진</u>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9. ~ 19. (생략) ④ 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u>	<u>리·운영</u> 3의3. <u>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u> 3의4. <u>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및 실적 평가·분석</u> 3의5. <u>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u> 4. <u>여성폭력추방주간 등 관련 홍보 및 포상</u> 5. (현행과 같음) 6. (삭제) 7. <u>여성폭력 통계 구축 총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등 연구</u> 8. <u>여성폭력 방지</u> ----- ----- 8의2. <u>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도·감독</u> 9. ~ 19. (현행과 같음) ④ ----- -----. 1. <u>성희롱·성폭력 방지</u> -----
--	--

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2. <u>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u> <u>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u> <신 설> 3. <u>여성·아동·청소년 성폭력</u> <u>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u> <u>터 및 중앙지원단의 설치·운영</u> <u>에 관한 사항</u> 4. · 5. (현행과 같음) 6. <u>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u> <u>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u> <u>의 개발·운영</u> 7. (생 략) 8. <u>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u> <u>홍보에 관한 사항</u> 9. <u>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u> <u>정책의 수립·시행</u> 10. <u>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국민</u> <u>홍보에 관한 사항</u> <신 설>	----- 2. ---- <u>방지</u> ----- <u>보호에</u> <u>관한</u> ----- -- 3. <u>관계 법령에 따른 성희롱·성</u> <u>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u> 4. <u>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u> <u>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u> <u>관한 사항</u> 5. · 6. (현행 제4항·제5항과 같 음) 7. <u>성폭력 피해자</u> ----- ----- 8. (현행 제7호와 같음) 9. <u>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u> <u>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u> 10. <삭 제> 11. < 삭 제 > ⑤ <u>권익침해방지과장은 다음 사</u> <u>항을 분장한다.</u> 1. <u>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u> <u>책 총괄 및 이행 점검</u>
---	--

⑤ (생 략)

⑥ 권익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에 관한 사항

9. 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며, 이하 “아동·여성폭력등”이라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연구 및 법·제도 개선

4.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총괄·조정 및 이행점검

6.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성희롱 방지 및 대응 컨설팅 지원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9.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며, 이하 “아동·여성폭력등”이라 한다) 예

한다)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방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10. <u>성교육 및 아동·여성폭력 등 예방교육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u>	10. <u>아동·여성폭력 등 예방교육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u>
11. <u>성교육 및 아동·여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시와 그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u>	11. <u>아동·여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시와 그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u>
12. 여성·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2. < 삭제 >
13. <u>성교육 및 아동·여성폭력 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에 관한 사항</u>	13. <u>아동·여성폭력 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에 관한 사항</u>
14. <u>성교육 및 아동·여성폭력 등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u>	14. <u>아동·여성폭력 등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u>
15. <u>아동·청소년의 성문화 개선 및 성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에 관한 사항</u>	15. <u>아동·여성폭력 등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에 관한 사항</u>
16. <u>아동·여성폭력 등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u>	16. < 삭제 >
17. ~ 18. (생략)	17. ~ 18. (현행과 같음)
⑦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1. 아동·청소년의 정보호를 위한 <u>시책</u>의 수립·시행 2. ~ 9. (생략) 10.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u>운영에 관한 사항</u> 11. ~ 14. (생략) 제9조(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성가족부 직제」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u>5퍼센트</u>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④ (생략)	1. 아동·청소년의 정보호를 위한 <u>정책</u>의 수립·시행 2. ~ 9. (현행과 같음) 10.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u>운영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 권교육 등 성교육에 관한 사항</u> 11. ~ 14. (현행과 같음) 제9조(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u>7퍼센트</u>-----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여성가족부 직제 [별표 1]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68</u>	<u>275</u>	+7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262</u>	<u>269</u>	+7
·	·	·	
·	·	·	
일반직 계	<u>258</u>	<u>265</u>	+7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u>	<u>2</u>	+1
·	·	·	
·	·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	<u>33</u>	<u>37</u>	+4
사무관 · 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	·	·	
·	·	·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전산 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통 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 ·	<u>21</u> · ·	<u>22</u> · ·	+1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전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 ·	<u>16</u> · ·	<u>17</u> · ·	+1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여성가족부 직제 [별표 2]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70</u>	<u>277</u>	+7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264</u>	<u>271</u>	+7
·	·	·	
·	·	·	
일반직 계	<u>260</u>	<u>267</u>	+7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2	+1
·	·	·	
·	·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	<u>35</u>	<u>39</u>	+4
사무관 · 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	·	·	
·	·	·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전산 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통 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9	20	+1
·	·	·	
·	·	·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전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6	17	+1
·	·	·	
·	·	·	